

3.

공직선거법

이 자료는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선거운동 일반



[강의 보기]

1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란? (정당법 제37조)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은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나 국회의원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3 선거운동기간의 예외(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

- 예비후보자 등이 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

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규정(법제60조의3)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4 투표참여 권유활동

- 주체 : 누구든지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각종 단체나 개인(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 자신의 명의를 밝혀 스스로 하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의 명의로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님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할 것이나,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후보자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할 수 있음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2 선거운동기구

1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선거운동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지역구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다만,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2 선거운동기구에 홍보물 설치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규격·수량에 제한 없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는 그 외에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음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3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두어야 함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은 시·도의원선거는 10인 이내, 자치구·시·군선거는 8인 이내의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문자메시지 전송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2) 시 기 : 상시
- (3)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
- (4)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총 8회 이내

자동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문자 외에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함

2 전자우편 전송 등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2) 시 기 : 상시
 - (3)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함

3 명함 배부

(1) 규격·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
- 명함의 종류, 색상, 재질과 그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바, 예비후보자는 2종 이상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고, 그 수량도 예비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면 됨

(2)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3)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각각 독립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4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

- (1) 종수·면수 : 1종, 8면 이내
- (2)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3) 발송방법
 -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 횟 수 : 제한 없음
- (4)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5 어깨띠 및 표지물

- (1) 주체 : 예비후보자
- (2) 게재사항 : 기호·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6 말 또는 전화이용 지지호소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2) 방 법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당내경선

1 당내경선의 개념

- 정당은 공식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는 바, 당내경선에는 ①당원만이 참여하는 경우, ②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2가지 유형이 있음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 당내경선에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당이 법 제57조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함.

2 당내경선운동(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 (1) 당내경선사무소 : 당내경선사무소 1개소
- (2) 경선후보자 명함, 경선훈보물

(3)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5 후보자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1) 선거운동기구

- 설치수 : 선거사무소 1개소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 영업소 안에 들 수 없음

(2)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명
-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시·도의원선거 : 10명 이내, 자치구·시·군선거 : 8명 이내)
-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임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2 인쇄물 이용

(1) 후보자의 명함

○ 배부주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각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지정한 1명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배부시기

선거운동기간 중

○ 게재사항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와 달리 호별 방문하여 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부를 금지하는 장소는 없음

(2) 선거벽보

- 게재내용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선거공보

○ 책자형 선거공보

- 면 수 : 8면 이내
- 게재내용(후보자정보공개자료)
 - 재산상황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각 재산총액
 - 병역사항 : 후보자 및 그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질

병명,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 전과기록 : 후보자 본인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죄명(실효된 형 포함)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

○ 점자형 선거공보

○ 게재내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며,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전대상도 아님

3 시설물 이용

(1)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규격 : 제한 없음
- 게시방법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음

(2) 거리게시 현수막

- 수량 :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

※ 장소를 옮겨 게시하는 행위 가능. 다만, 선거일에는 이동 게시할 수 없음

4 어깨띠 등 소품 이용

- 주 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사용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
- 종류 및 규격(금액)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 옷 : 개당 단가는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3만원 이내)
 - 표찰, 수기, 마스크트,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 ※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이 어깨띠나 소품 등을 착용하고 시내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가능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1) 주 체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2)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 (3) 내 용 :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4) 연설·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5) 옥내모임에서의 연설·대담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 (6) 자동차와 확성장치의수량 등

(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1대·1조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후보자마다 자동차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

※ 4개 동시선거의 경우 특례규정(법제216조)에 의하여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나) 확성장치의 소음기준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 정격출력 3킬로와트

2) 휴대용 확성장치 : 정격출력 30와트

(7)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사용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6 인터넷광고 이용

(1) 주 체 : 후보자

(2)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

(4) 방 법

○ 인터넷광고의 형식,크기,규격은 제한 없음

6 정치자금

1 정치자금의 개념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이러한 정치자금은 반드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야 함

2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치자금으로는 ①본인의 자산, ②정당의 지원금, ③제3자로부터의 차입금, ④후원금, ⑤친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품이 있음



※ 친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시중의 통상 거래가격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고, 무상으로 차입하거나 시중의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은 이율이나 가격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됨

3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 (1) 후원회지정권자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2) 후원회의 모금한도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3)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①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수 없음
- ②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음
- (4)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한도 : 500만원

4 정치자금 수입의 회계처리

- (1) 수입처리 회계원칙
-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함
 -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계좌로 입금처리 하여야 함
 -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 외로는 기부 받을 수 없음

5 정치자금의 지출

(1) 선거비용의 정의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과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함

(2) 선거비용의 범위

- ①법정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②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③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④누구든지 후보자 등과 통모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따라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전대상도 아님

(3)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목에서 지출함

- ①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⑤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
- ⑥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
- ⑦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⑧ 선거사무소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다과 등의 비용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제공 비용을 제외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⑨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
- 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4회 초과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4)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 + (인구수×100원)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00만원 + (인구수×100원)

(5) 정치자금 지출처리 회계원칙

-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함
-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함
- 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현금지출 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지출액 약정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 지출과목을 준수하여야 함

6 선거비용 보전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 보전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금액의 50% 보전

-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7 주요 제한·금지 사례

1 기부행위

(1) 기부행위의 개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에 아래의 유형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음

- ①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의례적 행위

- ③구호적·자선적 행위
- ④직무상의 행위

(3) 주체별 제한내용

- (가) 지방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에 불문하고 상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주례행위 포함)
- (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 선거기간 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선거기간 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에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다) 제3자(누구든지)
 - 선거에 관하여 상시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4)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할 수 없는 사례(예시)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봉투에 돈을 넣어 헌금하는 행위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의회위원이 지역 현안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관내 식당에서 언론인,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등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매수행위

매수행위의 개념

선거관계자 등에 대하여 당선·낙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 등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

매수행위의 유형

- 1) 투표나 당선·낙선의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매수하는 행위
-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등의 각종 기관·단체·시설을 매수하는 행위
-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를 대상으로 매수하는 행위
- 4)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정수당·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선거운동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7)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 8) 당내경선에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9) 당내경선후보자로 선출과 관련하여 그리고 경선선거인의 투표와 관련하여 경선후보자, 경선운동관계자 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10) 재산상의 이익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선거인, 선거사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11) 기 타

3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금지

1)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또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를 하는 행위

후보자비방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특정 지역 등 비하·모욕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행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

4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은 가능함

5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무원 등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주 체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 체 : 공무원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간주규정 : 공무원이 소속직원, 법 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봄

○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주체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

○ 상시금지행위

-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법 제108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거짓응답 및 착신전환 등 이용 중복응답 금지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시기별 유의사항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7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

사조직설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유사기관설치 금지

-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함

8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와 선거에 관한 인쇄물 등 배부·게시 등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에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허용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

○ 금지기간 : 상시

○ 금지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하는 행위

9 의정활동보고의 허용·금지

○ 주 체 : 지방의원

○ 금지기간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

○ 카카오톡·모바일메신저·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상시 전송하는 행위

○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언론사 및 정당의 홈페이지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토론방 등에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행위

○ 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8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1)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 (2)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법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

- 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내의 친지의 집을 방문하여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 ② 입후보예정자가 음력설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③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거리에서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공약을 밝히는 행위
- ④ 시민단체가 선거일을 100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거리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2. 아래는 지방선거의 당내경선을 준비하는 실무진의 대화 중 일부이다. 다음 중 틀린 발언을 한 사람은? ()

지현 :	당내 경선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선험의자가 서면합의를 통해 합의하는 경우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을 꾸리는 게 원칙이며, 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의 선거인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인 :	맞습니다. 선거인단은 당원과 비당원으로 구분되고, 이 중 비당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요.
창완 :	경선에 탈락한 경우 같은 선거구에서 다른 당으로 출마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완득 :	우리 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지만, 이의 제기는 당이 받습니다.이에 대한 준비 역시 필요해요.

- ①지현 ②우인 ③창완 ④완득

3. 다음 중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①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정월대보름·연말연시·농번기·성년의 날·각종 기념일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 ③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각각 선택하여 한번 클릭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하다.
- ④ 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도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에 규정된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

- ①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 ②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후보자의 아들이 지출한 불법 기부행위 비용
-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한 식사비용

5.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선거일 전 6일전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선거일 전 6일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 조사를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기관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반이다.
-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6.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언급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더라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장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연설 등을 하거나 연설·대담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병행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 아닌 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7.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중 일부이다. 틀린 내용을 고르면? ()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출마자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금전이 오고 가는 문제가 제일 예민할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의 특정 사회단체에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②자원봉사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통신비용과 인건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③선거기간 중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물이나 돈봉투를 배부하는 행위를 할 시에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도 매수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구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 등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 매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④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고의 대가로 회계 책임자에게 법정수당 외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가능합니다.

8.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상대방에게 주례행위를 포함하여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상시 제한된다.

9.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② 공표된 내용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허위사실공표는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이 있으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처벌된다.
- ④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

※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와 목적의 두 가지 주관적 요건(내심의 의사)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허위에 대한 인식이란 ‘고의’에 관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

10.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

- ①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생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②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비방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③ 비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1.④ 2.③ 3.④ 4.① 5.② 6.④ 7.④ 8.② 9.③ 10.④